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제3차)

1.일 시	2023년 3월 30일(목) 13시	2.장 소	9동 1층 중회의실
3.참석자	백 , 김 , 김 , 노 , 염 , 이 , 이	4.불참자	전 , 이
5.안 건	1) 2023학년도 입학금 산정(안) 보완 사항		

6.회의 내용

위원장 : 고등교육법 제11조 및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 참석으로 회의가 성원되었음을 알리며 개회를 선언하고 2023학년도 입학금 산정(안) 보완 사항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였음을 설명함.

(제 1의 안) 2023학년도 입학금 산정(안) 보완 사항

위원장 : 2023학년도 입학금 산정(안) 보완 사항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설명해 줄 것을 주무부서에 요청함.

주무부서 : 김 위원은 지난 2023학년도 제1, 2차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입학금 및 등록금 산정(안) 관련하여 보완 사항이 필요함을 말하며, 2023학년도 입학금 폐지에 따른 교육부에서 인정한 1인당 입학금 실비용 분 등록금 산입과 관련하여 2023학년도 입학금 실비용(165,990원)을 ‘신입생(1학년) 1학기 수업료에 한하여 산입’에 대한 사항을 ‘신입생 및 편입생 입학학기 수업료에 한하여 산입’ 진행함으로 보완하고자 함을 설명함.

위 원 : 두 가지 문구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어떠한 사항으로 보완이 필요한지 자세한 설명의 요청함.

주무부서 : 입학금 실비용 분에 대한 등록금 산입은 2023학년도 시행 대학에 한하여 국가장학금 II유형(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을 통해 지원 예정이며, 편입생 또한 입학금이 산입된 등록금 산정 대상임에 이를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학생에게 최대한 지원하고자 함을 말하고,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생 경우 국가장학금 II유형(신·편입생 지원) 장학금 수혜 불가 대상임을 설명함.

간서명 - 위원 : 김

위원 : 노

위원 : 염

위 원 : 1학기 수업료와 입학학기 수업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질의함.

주무부서 : 1학년 신입생의 경우 대다수 1학기로 입학이 이루어지지만, 편입생 경우 2학기에 입학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에, 이를 '입학학기' 로 명시함으로써 기준을 명확하게 함을 설명함.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있는지 질의함.

위 원 : 추가 의견 없음을 답함.

위원장 : 입학금 실비용 등록금 산입과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을 통해 학생들이 최대한 국가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게 당부를 말하며, 2023학년도 입학금 산정(안) 보완 사항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회의록 서명의 간소화를 위해 학교 측 김 위원, 학생 측 노 위원, 외부인사 영 위원을 3인을 간서명자로 할 것을 제안함.

위 원 : 위원 모두 동의함.

위원장 :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모든 위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폐회를 선언함.

위 심의사항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서명·날인함

2023년 03월 30일

위원장 : 백

부위원장: 김

위 원 : 김

위 원 : 영

위 원 : 이

위 원 : 이

위 원 : 노

위 원 : 전

①불감

위 원 : 이

①불감